

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 수입인지 분 실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간 현금으로 주고받는 것은 납부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인지세 납부 기한 및 방법
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 계약서
납부·기한 방법	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 ※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온라인 :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오프라인 : 가까운 은행·우체국 방문 (방문전 문의 요망)

인지세 납부액 및 가산세

■ 인지세 납부액 (초과 ~ 이하)

구분	인지세액	금액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등)	1,000만원 ~ 3,000만원	2만원
	3,000만원 ~ 5,000만원	4만원
	5,000만원 ~ 1억원	7만원
	1억원 ~ 10억원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■ 가산세[21.01.01부터 적용] (관계법령)국세기본법 제 47조 4 제9항

구분	인지세액	금액
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액 비율	3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100% 가산
	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	납부 세액의 200% 가산
	6개월 초과	납부 세액의 300% 가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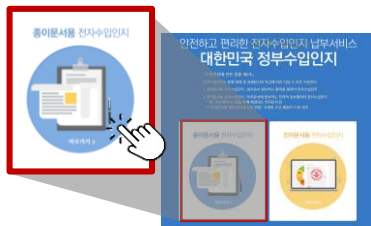
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처 및 방법

■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가까운 은행·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

인지세 (전자수입인지 구매처 및 방법)

01 해당 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0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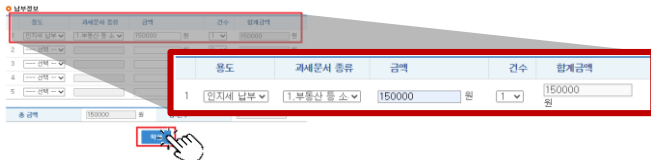


03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04 구매 : 납부정보 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
- ③ 금액: 15만원(10억 이하)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0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

오프라인 이용 시 은행·우체국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후 발급 ※현금 수납만 가능